

추진위·조합 해산신청 동의율 산정기준 변경

(동대문구 도시계획과)

추진위·조합 해산신청 동의율 산정 시 해산동의를 사실상 불가하거나 곤란한 국·공유지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함으로써, 해산 신청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함.

□ 논의배경

- 2010. 7.15. 도정법시행령 제28조(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) 개정에 따라 국·공유지 재산관리청이 토지등소유자로 추가됨.
- 따라서 2010. 7.15. 이전 추진위가 승인된 구역의 경우 해산 신청을 위해서는 추진위 설립 시 필요했던 동의서 수보다 많은 동의서 징구가 필요하여, 형평성의 문제 발생(동의요건은 모두 “과반수의 동의”임).
- ※ 해산동의서 징구 중인 구역들에서 재산관리청에 해산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, 각 자치구 및 서울시, 국토교통부 등 재산관리청에서 해산동의서 작성은 사실상 불가하거나 곤란함.

□ 관련법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

□ 제안사항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국·공유지 재산관리청은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
예)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
⇒ 국·공유지 재산관리청을 제외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

□ 기대효과

- 재산관리청에 대한 해산동의서 작성 요구 민원 해소